

투자설명서 변경 내용

- **대상펀드명** : 트러스톤 제갈공명 소득공제 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 **변경 사유** : ①운용전문인력 변경(이양병, 신홍섭 → 정무일, 전춘봉)
 ②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③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효력발생일** : 2020. 7. 22.

□ **변경 내용**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요약정보			
투자비용	동종유형 총보수 최근 기준으로 기재	<u>2020.1.31 기준</u>	<u>2020. 5. 31. 기준</u>
운용전문인력	운용인력 변경 최근 기준으로 기재	주식 책임운용역 : 이양병 채권 책임운용역 : 신홍섭 <u>2020. 2. 29. 기준</u>	주식 책임운용역 : 정무일 채권 책임운용역 : 전춘봉 <u>2020. 6. 30. 기준</u>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 운용전문인력 가. 운용전문인력	운용인력 변경 최근 기준으로 기재	주식 책임운용역 : 이양병 채권 책임운용역 : 신홍섭 <u>2020. 2. 29. 기준</u>	주식 책임운용역 : 정무일 채권 책임운용역 : 전춘봉 <u>2020. 6. 30. 기준</u>
5. 운용전문인력 가. 운용전문인력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 는 모투자신탁의 운용전 문인력]	운용인력 변경	중기채권증권모투자신탁[채 권] : 신홍섭 중장기채권증권모투자신탁 [채권] : 양진모 증권모투자신탁[주식] : 이 양병	중기채권증권모투자신탁[채 권] : 전춘봉 중장기증권모투자신탁[채 권] : 전춘봉 증권모투자신탁[주식] : 정 무일
5. 운용전문인력 나. 운용중인 집합투자 기구에 관한 사항	운용인력 변경 최근 기준으로 기재	주식 책임운용역 : 이양병 채권 책임운용역 : 신홍섭 <u>2020. 3. 31. 기준</u>	주식 책임운용역 : 정무일 채권 책임운용역 : 전춘봉 <u>2020. 6. 30. 기준</u>

<p>5. 운용전문인력 다. 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p>	<p>운용인력 변경</p>	<p>-</p>	<p><u>[주식 책임운용역]</u> <u>2017.07.27~2020.07.21</u> <u>: 이양병</u> <u>2020.07.22~현재 : 정무일</u></p>
			<p><u>[채권 책임운용역]</u> <u>2020.01.09~2020.07.21</u> <u>: 신홍섭</u> <u>2020.07.22~현재 : 전춘봉</u></p>
<p>5. 운용전문인력 다. 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 는 모투자신탁의 운용전 문인력]</p>	<p>운용인력 변경</p>	<p>-</p>	<p><u>[증권모]</u> <u>2017.07.27~2020.07.21</u> <u>: 이양병</u> <u>2020.07.22~현재 : 정무일</u> <u>[중기채권모]</u> <u>2020.01.09~2020.07.21</u> <u>: 신홍섭</u> <u>2020.07.22~현재 : 전춘봉</u> <u>[중장기모]</u> <u>2020.01.09~2020.07.21</u> <u>: 양진모</u> <u>2020.07.22~현재 : 전춘봉</u></p>
<p>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 대상 가. 투자 대상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 는 모투자신탁의 주요 투자 대상]</p>	<p>전자증권법 시행에 따 른 사항 반영</p>	<p>(3)증권모투자신탁[주식] 1)지분증권(주식 등) : 법 제 4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 한 지분증권 및 법 제 4 조 제 8 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 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 련된 증권예탁증권(주권상 장법인 또는 한국예탁결제원 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 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 한 공모주)</p>	<p>(3)증권모투자신탁[주식] 1)지분증권(주식 등) : 법 제 4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 한 지분증권 및 법 제 4 조 제 8 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 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 련된 증권예탁증권(주권상 장법인 또는 전자등록기관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p>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동종유형 총보수 최근 기준으로 기재	2020.1.31 기준	2020. 5. 31. 기준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최근 기준으로 기재	2020. 2. 기준	2020. 6. 30 기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한국예탁결제원	전자등록기관
나. 주요 업무			
(3) 업무위탁			
② 수익자명부 작성업무의 위탁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합니다.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투자신탁을 합병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를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하여야 합니다.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투자신탁을 합병할 수 있습니다.
가. 수익자총회 등			
(3)수익자총회 결의사항		-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받는 신탁보수 또는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신탁업자의 변경 / 투자신탁계약기간의 변경 (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	-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받는 신탁보수 또는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신탁업자의 변경 / 투자신탁계약기간의 변경 (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

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법령 제 80 조제 1 항제 3 호의 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 / 집합투자업자 변경 /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신설〉

- 다만, 다음 각 호 외의 사유로 수익자가 소집을 요청한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변경될 경우 수익자는 해당 변경으로 인해 초래되는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의 손실 등을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에게 보상하여야 함

1.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법령·신탁계약에 중대한 위반 행위를 한 경우
2.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3.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
업자의 변경에 동의하거나,
신탁업자가 신탁업자의 변
경에 동의한 경우

- 위의 사항에 따른 손실
등의 보상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의 지
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수익
자총회 결의일로부터 제 5
영업일 이내에 투자신탁재
산에서 인출함

1. 대상금액 : 해당 투자신탁
보수율에 수익자총회 결
의일 익영업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과 제 2 호의 대
상기간 일수를 곱한 금액
및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
자가 투자신탁 설정과 관련
하여 지급한 부대비용(자문
료, 시스템개발비 등)을 포
함

2. 대상기간 : 변경 시행일
로부터 1 년간. 단, 신탁계
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에는 변경 시행일로부터 신탁
계약기간 종료일까지로
함

-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
는 위의 보상 등 과는 별도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수
익자를 상대로(법제 190 조
제 3 항에 따른 신탁업자가
수익자총회를 요청하는 경
우는 수익자 및 신탁업자로

			<u>한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u>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 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2) 자산운용보고서 (3) 자산보관·관리보고 서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 른 변경사항 반영	<u>한국예탁원</u> <u>직접 또는 전자우편 등의</u> <u>방법으로</u>	<u>전자등록기관</u> <u>직접, 전자우편 또는 이와</u> <u>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u> <u>로</u>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 에 관한 사항 나. 수시공시 (1) 신탁계약변경에 관 한 공시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 른 변경사항 반영	<u>한국예탁원</u>	<u>전자등록기관</u>